



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

제3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17. 1. 17. (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김덕환

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17년 1월 6일
- 회부일자 : 2017년 1월 9일

3. 제안이유

- 공익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보완과, 내부 신고자의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과 동일한 용어(공익신고)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본 조례의 제명을 「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
- 신고 대상에 학교법인 관계자 포함(안 제2조)
-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하도록 단서 조항 신설(안 제5조제1항)
-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책임관(감서부서의 장) 지정 (안 제5조의2)
- 신고자 및 신고 조력자 보호 규정 (안 제7조제4항,안 제7조의2)

- 보상심의위원의 제척 사유 및 기과 회피에 대한 신청 절차 등 규정 및 위촉 해제 규정 신설(안 제12조, 제12조의2)
- 보상금 신청 절차 개선(안 제14조)

5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제명을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과 동일한 용어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하는 것이며,
- 신고자 및 신고 조력자 보호 규정, 보상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, 보상금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보상금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,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